

발전기금관리규정

시행일: 2022. 04.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발전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의 정의)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 등의 기부금품과 적립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명칭) 기금의 수증(약정) 시 기부자의 의사와 유치목적, 용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금의 구체적인 명칭을 정해야 한다.

제2장 발전기금관리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된다. 다만, 대외부총장의 유고 시 총장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무부총장(서울), 학무부총장(국제), 의무부총장, 행·재정부총장, 기획조정처장, 재무처장, 대외협력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부자, 동문, 학부모, 모금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단위별소위원회) ① 기금의 용도가 단위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기금(이하 “단위기금”이라 한다)의 사용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기금단위별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해당 기금이 조성된 단위부서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해당부서장이 되며 차상위자와 행정실 직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5인을 초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위부서 소속 교직원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 ③ 소위원회는 단위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장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 제8조(접수 및 관리) ① 기부금품의 접수는 대외협력처장이 관장한다.
② 부동산 및 기타 재산가치가 상당한 물품 등을 수증하는 때에는 대외협력처장과 해당 부서장이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기관)에게 의뢰 후 감정평가하여 가액(價額)을 결정한다.
③ 부동산 수증에 관한 사항은 대외협력처장이 관장하되,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의뢰한다.
④ 일반 수증물품은 해당 부서장이 관리하며 수증에 따른 사항은 「물품관리규정」에 따르되, 「물품관리규정」의 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증물품은 물품의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단, 기증자가 수증에 관한 사항을 교내 특정부서나 단과대학(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서나 대학(원)이 소관부서 역할을 하되, 수증물품의 종류에 따라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기부금품의 수증 제한)

-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품 수증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본교 창학정신과 교시, 교육목표, 제반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성격의 기부금품
 2. 기부금품 운영(관리 및 예우)경비가 과도하거나 기부금품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
 3. 본교가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예우, 관리)을 제시하는 경우

제4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수익

- 제10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기부자 의사와 유치목적,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 유치,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연구비,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본교의 교육·연구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위기금의 사용은 소위원회의 심의와 대외협력처장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부서의 결재계통에 따라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다만, 단과대학 자율예산기금의 사용은 소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용도가 단위부서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와 대외협력처장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부서의 결재계통에 따라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하지 않는 기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대외협력처장은 매 학년도 1회 이상 직전 학년도 기금 사용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 수익)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금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수익금의 귀속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2조(제반 경비)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처리) ① 기금은 교비회계로 관리하되,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② 대외협력처장은 총장명의로 기부자에게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기금 기부자 및 기금 유치 공헌자 예우

- 제14조(기금 기부자 예우) ①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감사패 또는 감사장의 수여
 2. 본교 주요행사에의 초청
 3. 본교 창학이념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자가 원하는 명칭(기부자의 이름 또는 아호 등)을 새긴 기념물의 설치, 건물명칭 부여, 건물의 일부 공간에 대한 명칭 등의 부여
 4. 기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수증 및 기타 재산가치가 상당한 물품은 자산 가치평가 및 소유권 이전 등 권

리보전 완료 후 예우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금품 및 부동산 평가액 이상의 예우는 하지 않는다.
③ 대외협력처장은 기부의 내용 및 규모와 사회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15조(기금 유치 공헌자 예우) ①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 유치에 공헌한 본교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대외협력처장은 제1항의 포상을 받은 교직원에게 「교수업적평가규정」 또는 「직원인사평정규정」에 의거하여 실천실적에 공헌내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추천할 수 있다.

③ 대외협력처 소속의 교직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장 간접비

제16조(간접비 징수) ① 제10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기부금을 대상으로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간접비 징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간접비 징수율은 총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17조(주관부서) 발전기금의 관리·사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대외협력처장이 주관한다.

제18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외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5조의 간접비 징수에 관한 사항은 2016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적용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부터 시행한다.